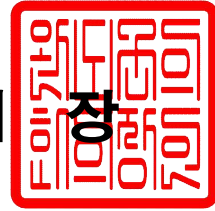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2. 발 의 자 : 허 공 회 의원

3. 제정이유

-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로부터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산불방지대책 수립(안 제5조)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안 제6조, 안 제7조)

5.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

6. 조례안예고기간 : 2025. 5. 26. ~ 2025. 5. 30.

7. 의견제출

-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회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의정지원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 (우) 59121
(전화: 061-550-5935, FAX: 061-550-5907)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8.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팀(전화: 061-550-593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1부. 끝.

완도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완도군 내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 방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완도군 내 다중집합 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방지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군수는 완도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산불방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활동 관련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 및 배포
2.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산불방지 활동 홍보
3. 군민과 단체가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
4. 산림인접지역의 태우기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5.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항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 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2. 산불 진화 활동 참여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제8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산림보호법」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매년 전국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및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과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